지원 주택 세입자의 권리 통지 템플릿

이 통지는 지원 주택 세입자의 권리에 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 주택 제공자는 다음의 경우 예비 및 영구 세입자에게 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 인터뷰 당시
- 해당 호실 첫 입주 시
- 각 임대 및 프로그램 계약 갱신 시
- 요청 시

지원 주택 제공자는 읽는 데 어려움이 있는 세입자에게 이 통지를 읽어줘야 하며 아래에 나열된 언어 중 세입자의 선호 언어가 포함된 경우 해당 언어로 세입자에게 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원 주택 제공자는 이 통지가 세입자의 선호 언어로 번역되지 않은 경우, 번역 서비스를 요청하는 세입자를 반드시 도와야 합니다. 이 통지는 다음의 언어로 제공됩니다: 스페인어, 중국어, 러시아어, 벵갈어, 아이티 프랑스어, 한국어, 이탈리아어, 아랍어, 우르두어, 프랑스어, 폴란드어 이 통지를 이러한 언어로 읽으려면, nyc.gov/health 를 방문하여 "supportive housing" **(지원 주택) 을 검색하십시오.**

세입자 권리

이 통지는 지원 주택 세입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일반 요약이며 법적 조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에 의해 제공되지 않은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각 개인이 주택 관련 문제에 대한 자세한 서면 기록을 보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311** 번으로 전화하여 세입자 헬프 라인을 요청하십시오.

지원 주택 세입자로서 귀하는 다음의 권리를 가집니다.

1. 해충, 누수, 곰팡이, 망가진 세간 등 위험하거나 유해하지 않은 환경에서의 거주. 난방, 온수, 전기 및 가스 등의 공익사업을 이용할 권리.
    a. 유지관리를 요청하려면 하단의 "건물 정보" 하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건물의 유지관리 팀이나 귀하의 지원 주택 제공자에게 전화하십시오.
    b. 수리되지 않았으며 지속되는 문제를 보고하고 NYC 주택보전개발부 (Department of 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HPD)에 귀하의 자택 조사를 요청하려면 **311**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c. 부동산 소유자 또는 주택 제공자는 귀하가 자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을 파악하도록 등록, 임대 갱신 및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때 귀하에게 고충 해결 절차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2. 부동산 소유자, 부동산 관리자 또는 지원 주택 제공자를 상대로 괴롭힘을 포함, NYC 주택 유지관리법의 위반을 시정하도록 법정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더 자세한 정보는 **311** 번으로 전화하여 세입자 헬프라인을 요청하거나 해당 자치구의 주택 법원에 방문하십시오.
   a. 부동산 소유자가 귀하를 쫓아내고 문을 잠그거나 귀하를 자택에서 내쫓으려고 하는 경우, 즉시 **911** 번으로 전화하여 불법 폐쇄를 보고하십시오. 그 다음, **311** 번으로 전화하여 세입자 헬프라인을 요청하십시오.

3. 퇴거 전의 법원 절차
   a. NYC 의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에 의거하여 귀하는 거주 지역 우편번호나 이민 상태와 상관없이 **무료 퇴거 방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변호를 위해 이 서비스에 연결하고 싶은 경우 다음을 따르십시오:
      i. **311** 번으로 전화해 세입자 헬프라인을 요청합니다.
      ii. 주택 법원 답변 핫라인(718-557-1379)으로 전화합니다.
      iii. 첫 법원 출두 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b. **판사의 명령 없이는 아무도 귀하를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합법적으로 퇴거되기 전 뉴욕시 마셜 또는 뉴욕시 보안관 사무실의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c. 귀하를 퇴거시키고자 하는 개인 또는 기업은 Real Property Actions and Proceedings Law, Section 741(부동산 조치 및 절차법, 섹션 741)에 설명된 특정 정보를 포함하는 청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청원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다음을 따릅니다:
      i. **311** 번으로 전화해 세입자 헬프라인을 요청합니다.
      ii. 주택 법원 답변 핫라인(718-557-1379)으로 전화합니다.

4. 신체, 정신 건강 또는 행동 장애를 수용하고 주택 내 모든 차별에서 보호받기 위해 귀하의 주택, 서비스 또는 두 가지 모두에 대한 합리적 변경을 요청합니다.

a. 장애에 따른 합리적인 편의를 요청하려는 경우, 하단에 제공된 연락처를 사용하여 귀하의 지원 주택 제공자에게 연락하십시오.
b. 귀하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NYC 인권위원회(NYC Commission on Human Rights), 212-416-0197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5. 임대료 영수증을 수령하고 임대료 지불 및 임대 체납금의 현재 원장과 함께 연간 수입 재인증서, 임대 및 점유 계약서의 사본을 요청하십시오. 이 정보를 요청하려면, 하단에 제공된 연락처를 이용하여 귀하의 지원 주택 제공자에게 연락하십시오.

6. 가족과 함께 살거나, 가족을 늘리거나, 때에 따라서는 룸메이트와 살 수도 있습니다. 가구 내 다른 사람을 추가(미성년자 또는 성인 자녀, 배우자나 동거 파트너)하고자 하는 경우 사회 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립니다. 귀하의 제공자는 해당 주택이 추가 구성원에게 적절하거나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저소득주택세액공제(Low-Income Housing Tax Credit, LIHTC) 건물, 임대료 계산 및 임대 또는 전대 임대의 변경 여부 등을 포함하여 타인을 해당 가구에 추가하는 것의 영향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7. 괴롭힘, 보복 또는 불이익 없이 세입자의 권리와 보호를 옹호하기 위한 세입자 협회 등의 모임에 가입하거나 조직을 만드십시오. 건물 내 공용 공간에서 사용비를 내지 않고도 이러한 모임을 주최할 수 있습니다. 지원 주택 제공자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다음의 정보는 지원 주택 제공자에 의해 작성됩니다.

지원 주택 제공자 정보		
지원 주택 제공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상단의 지원 주택 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해당 사항 전부 선택): □ NYC 사회복지부/ 인적자원관리 □ NYC 주택보존개발부 □ NYC 보건 및 정신위생부 이 기관에 불만을 신고하려는 경우, **311**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 기타: _____ 불만 신고는 다음으로 연락하십시오:		
이용 가능한 지원 서비스:		
서비스 요청 또는 변경 정책 및 절차 정보를 얻으려면 다음으로 연락하십시오:	전화번호:	이메일:
제공자의 자금 흐름(전체 자금 흐름에 해당되는 주요 규정 목록 포함), 퇴거 및 고충 정책(제공자의 대응 절차 및 타임라인 포함), 임대 체납금 또는 재정 관리 지원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요청하려면 다음으로 연락하십시오: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사회 서비스 또는 문제와 관련된 사례 관리를 논의하고 싶은 경우 다음으로 연락하십시오: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건물 정보
주소(호수 포함,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 소유주:	전화번호:	이메일:
부동산 관리자:	전화번호:	이메일:
수리 또는 유지관리 요청은 다음으로 연락하십시오: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추가 정보		
총 월 임대료:		
임대료 중 제공자 몫:		
임대료 중 세입자 몫:		
이 호실의 임대료는 안정되어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 알 수 없음	
한 호실의 임대 이력을 요청하려면, 뉴욕주 주택 및 지역 사회 재생과(Division of Housing and Community Renewal)에 다음 연락처로 연락하십시오: 상단의 지원 주택 제공자는 귀하가 해당 호실의 임대 이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이 호실은 세금 감면 또는 면제를 받는 건물에 있습니까?	□ 예 시작일: 종료일:	□ 아니요
이 호실은 이동식 보조금을 제공받고 있습니까?	□ 예 이동 요청 절차에 대해 더 자세한	□ 아니요

	정보를 얻으려면 다음으로 연락하십시오:	

귀하는 아래에 서명함으로써 귀하가 입주를 고려중인 아파트 또는 귀하가 거주 중인 아파트의 지원 주택 제공자로부터 이 통지의 사본을 받았음을 인정합니다.

세입자 또는 예비 세입자 이름:	
서명:	
날짜:	

지원 주택 제공자는 예비 또는 영구 세입자에게 이 통지의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서명된 사본은 지원 주택 제공자의 개인 파일에 보관됩니다.

12.24 Korean